# 크레인에 부딪힌 주형틀에 깔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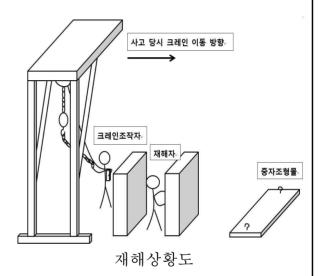
#### 재 해 개 요

'15. 7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물 공장에서 2개의 주형틀 사이에서 작업 하던 재해자가 이동하는 크레인의 기둥에 부딪혀 넘어진 주형틀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### 재 해 상 황 도







### 재해발생상황

- 주형틀 사이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주형틀이 이동하던 크 레인 기둥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함
- ※ 가해물 : 주형틀

- 크기 : W700 x H1,900 x L1,850 - 중량 : 600kg

○ 크레인을 이동시킨 동료 재해자는 크레인 기둥에 주형틀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고, 다만 크레인 후크에 걸려있는 줄걸이 체인만 주형틀에 닿지 않도록 손으로 당긴 상태에서 크레인을 이동시킴

# 재해발생 원인

- 주형틀 전도 방지조치 미실시
- 구조상 전도 위험이 높은 주형틀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었음
-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조치 미실시
- 크레인 작업은 관리감독자가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등을 하여야 하나, 전도 위험이 있는 주형틀 사이 에서 작업을 하는 상태임에도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음

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전도 방지조치 실시
- 주형틀은 원칙적으로 눕혀 놓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작업 특성상 세워 놓고 작업할 경우에는 지그 등을 사용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
-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 조치 실시
-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전도위험 장소에 있는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

## 관련 법규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- ② 사업주는 제품, 자재,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업무 등)
-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·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